# 교무위원회규정 3-1-3

규정번호 3-1-3
제정일자 1982.10.1
최근개정 2026.9.21
개정차수 22차 개정
관리부서 기획평가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부총장·교목실장·기획실장·교무처장·학생지원처장·산학협력처장·사무처장·대학혁신본부장·평생교육본부장·국제교류본부장·학술정보원장·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2.03., 2018.08.27., 2018.12.10., 2025.3.31., 2026.5.18.)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약간 명의 교직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7.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교 직제규정 제7조(직무대행·협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24., 2026.5.18.)

제4조(회의소집) 교무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위원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학과설치 개폐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사무기구의 개폐·변경에 관한 사항
4.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7.24.)

제7조(회의록) 교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8조(업무관리 및 간사) 교무위원회의 업무는 기획실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업무부서 팀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17.02.27., 2018.08.27.)

부 칙

이 규정은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09.2.26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3> <생략>

<4>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①·②, 제3조①, 제6조 중 “학장”을 각각 “총장”으로 한다.

<5> - <102> <생략>

부 칙(학칙) <2010.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 <2> <생략>

<3>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 중 “계열부장”을 각각 “학부장”으로 하고, 제8조의 “기획홍보과”를 각각 “기획홍보팀”으로, “기획홍보과장”을 각각 “기획홍보팀장”으로 한다.

<4> - <49>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학칙) <2012.6.4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1> <생략>

<2>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과반수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3> - <13> <생략>

부 칙(직제규정) <2013.7.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생략>

<2> 교무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①항의 “산학협력처장, 학생처장, 교학부장”을 각각 “산학협력처장, 학생지원처장, 대외협력처장”으로 하고, 제8조의 “기획홍보팀 기획홍보팀장”을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3> - <30>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칙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6호)

부 칙(직제규정) <2025.3.31 개정>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1> 교무위원회규정(3-1-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①항의 “평생교육원장”을 “평생교육본부장”으로 한다.

<2> - <17> (생략)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항)